<table>
<tr><th>위치</th><th>오류유형</th><th colspan="2">수정 전</th><th>수정 후</th></tr>
<tr><td rowspan="2">122p
적중예상문제
번호 : 30</td><td rowspan="2">해설</td><td>수정 전</td><td colspan="2">해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은 지리적표시등록을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58조 제1항).
• 등록일 및 등록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자의 성명,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및 전화번호
•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명칭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 품질의 특성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 등록자의 자체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td></tr>
<tr><td>수정 후</td><td colspan="2">법 제32조 제5항에 따른 공고결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14조 제4항).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 및 등록 명칭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의 범위
·품질, 그 밖의 특징과 지리적 요인의 관계
·신청인의 자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계획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서류 및 그 부속서류의 열람 장소</td></tr>
<tr><td rowspan="2">132p
적중예상문제
번호 : 51</td><td rowspan="2">해설</td><td>수정 전</td><td colspan="2">해설 검정결과에 따른 조치(시행규칙 제128조의2 제1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농산가공품의 생산자・소유자(이하 이 조에서 "생산자 등"이라 한다)에게 법에 따른 다음의 조치를 하도록 그 처리 방법 및 처리기한을 정하여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조치 대상은 검정신청서에 기재된 재배지 면적 또는 물량에 해당하는 농수산물・농산가공품에 한정한다.
• 해당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해당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하는 기간 동안 출하 연기 또는 판매금지
• 해당 유해물질의 분해・소실기간이 길어 국내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및 수출용 등 식용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국내 식용으로의 판매금지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폐기</td></tr>
<tr><td>수정 후</td><td colspan="2">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법 제63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하였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을 생산한 자 또는 소유한 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어장·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
·해당 양식장의 수산물에 대한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처리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조치</td></tr>
<tr><td>143p
적중예상문제
번호 : 77</td><td>문제-문항</td><td colspan="2">② 지리적표시의 등록</td><td>② 임산물 지리적표시의 등록</td></tr>
</table>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